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90 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한정애·김준형·서영교

이수진 • 이학영 • 송옥주

민병덕 · 문진석 · 소병훈

이용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·정년연장·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·정년연장·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2009호) 및 「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"을 "국무총리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국무총리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"으로 한다.

4의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회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	제5조(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
등)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	등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	
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	
해양경찰위원회(이하 "위원회"	
라 한다)를 둔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의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6조
	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
	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해양수</u>	② <u>국무총</u>
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	리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
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	<u> 경찰청장은</u>
심의・의결이 필요한 사항은	
회의에 부칠 수 있다.	
③ <u>해양수산부장관은</u> 제1항 또	③ <u>국무총리·해양수산부장관</u>
는 제2항에 따라 심의・의결된	또는 해양경찰청장은
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	
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	
수 있다.	